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그 반론

법률소비자연맹 집행위원장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변호사

안 철 현

1. 토론의 주제에 대하여

가. 저작권법위반죄 개정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해 발제자께서는 교문위 대안(6개월, 100만 원)을 평가하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주장이나 우리의 법제에서 매우 이례적인 입법이라는 반대주장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재산권침해죄를 단순행위범 하나로 정한 것을 결과범과 목적범을 혼합하여 ‘합의금 장사’ 방지와 저작권자 보호 양면을 도모한 입체적 입법으로 타당한 입법이라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발제자의 의견은 발제자께서 반대의 주장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제자의 의견 또한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따로 반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다만 저는 발제자께서 주장하는데 있어 그 전제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안으로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 문제를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첫째, 전체 틀에 있어서는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왜 이에 반대하는 법률전문가, 학계,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에

따른 때 다른 법 개정이 등장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한정해서는 또 발제자께서 찬성하는 교문위의 대안과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해 보겠습니다.

2. 저작권법 개정의 출발점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

가. 친고죄 또는 비친고죄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일단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봐야 합니다. 최초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침해죄에 대해서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되, 단서에서 허위등록한 사람, 권리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사람, 신고하지 않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는 사람, 허가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사람 등, 즉 다소 사회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비친고죄, 즉 고소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스스로 우리의 국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영역을 넘어서 비친고죄의 적용범위를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까지 고소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비친고죄로) 법이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들과 그 밖에 시민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고 그 후 2016년 오늘까지도 비친고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비난과 법 개정의 논의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 다시 말해 저작권법 개정의 목소리는 친고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자고 하

는 것이 아닙니다. 친고죄의 적용범위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비친고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점입니다. 비친고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고소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것이 원칙이고)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늘임으로써 “합의금 장사”라는 폐단은 물론이고 수사력을 낭비하고 국가형벌권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선량한 국민을 억압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침해당한 저작권자는 정작 아무 말이 없는데도(고소가 없는데도), 제3자의 고발만으로 또는 국가기관이 스스로 나서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라. 이와 같은 비친고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법률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비난이 솟아지자 국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을 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상한 오해와 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명백한 것은 친고죄 적용범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 따라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주장, 합의금 장사가 가능하려면 저작권자가 형사절차의 개시 여부를 좌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친고죄일 때 가능한 것으로 법사위 대안에서 비친고죄의 대상을 축소하려는 수정안은 결국 친고죄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 장사 문제의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자칫 제대로 고민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대한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 대한법학교수회 등 법률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성명서까지 내면서 왜 비친고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과거의 법 개정을 비난하였는지 조금만 들

여다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다.

3. 법 개정 목소리의 배경에 대하여

가. 우리의 부모 세대에는 표준화, 통일성, 단일성, 일관성이 요구되었다면 오늘날은 다양성, 공존, 상대성 등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발제에서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입법기관에 대해 자신의 법률상식과 철학, 경험을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신문에 광고하고, 한편으로는 고발 등의 형태를 통해 국회에 법률개정을 요구한 것이 “입법로비”로 폄하되고 있는 점은 다소 안타깝습니다.

나. 미국 기업에 대해 어떤 사람이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피켓에 쓰여 있는 주장과 그 사람의 시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 시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그 사람이 시위를 하는 이유를 꼬치꼬치 따지면서 그 시위 이외의 요소들로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피켓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아마 그 사람이 이전에 미국 비자가 거부되어서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거나, 혹은 그 사람은 체구도 왜소하고 특별한 매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기가 없었는데 그 시위를 통해서 좀 유명해지려고 한다거나, 심지어 그 사람은 아마 미국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을 싫어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따위의 이유로 그 사태 자체를 해석하고 호도합니다. 그 시민단체가 왜 그와 같은 소위 “입법로비”를 하는 것인지 담담히 그 사태를 그 사태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 사태를 자신의 주관으로 끌어들이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4.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와 반대 목소리의 배경

가. 비친고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법률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는 비친고죄 적용범위가 사적인 영역까지 확대되어 합의금 장사에 따른 피해는 물론이고 저작권법이 무차별적인 공포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법규나 형벌 등을 가지고 백성을 교화시키려 하거나 인도하려 하는 등 인위적 조작이 심하게 백성들을 지배하면 할수록 나라는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철학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는 금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들은 점점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금기는 백성들을 답답하고 짜증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금기는 결국 백성들의 자율적 행위를 속박하여 무엇보다도 그것을 멋대로 생산해 내는 통치자나 국가기관에 대해 등을 돌리도록 한다는 철학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또 다른 한편에 서있는 반대의 목소리는 한미FTA를 전면내세우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힘을 보존하고 그 권한을 손에서 놓치지 않으려는 드러내지 못하지만 내심 지니고 있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한미FTA를 앞세우고 힘과 권한을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은 통치자나 국가기관이 백성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믿지 못하

면 백성들도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더 영악해 집니다. 토론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더라도 1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온라인에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할 영화나 음원이 무방비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운받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영화나 음원은 물론 저작물을 돈을 주고 이용합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 저작권법은 저 개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변화에는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의 개선, 특히 기술의 발달이 한 몫 했을지언정 법의 위화력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 오늘과 같이 이런 토론회를 가지게 된 것은 더 지협적으로 이미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비친고죄의 적용범위가 확대된 마당에 합의금 장사 등 그 폐단을 줄이고자 비친고죄의 적용범위를 좀 더 줄여보자는 공감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 한미FTA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협정문에서 ‘법적조치’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이를 비친고죄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 친고죄로 운영하더라도 이행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제자께서도 논문이나 기타 매체에서 미국FTA이행법을 거론한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 저작권법 개정의 청소년기본법 활용 제안

가. 저는 개인적으로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이전의 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동안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 왔고, 그 목소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산물인 것처럼 법 개정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 저작권법에서 비친고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나타난 폐단을 줄여보고자 비친고죄의 적용범위를 축소시켜 보자는 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못보고 있다고 봅니다.

다. 여기에서 그 동안의 폐단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에 대한 공포와 억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근본적인 이유에서건 비친고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그 동안의 법 개정을 수용하더라도 최소한 청소년의 불안과 위화감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라. 여기에서 청소년기본법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처벌하되, 최소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고발이나 국가 스스로 나서서 청소년을 처벌하는 경우는 막아보

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제일 먼저 아니면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반론이 23세 11월과 24세 1월인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연령의 상한(선거연령, 형사미성년자 등)을 고려한다면 굳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납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